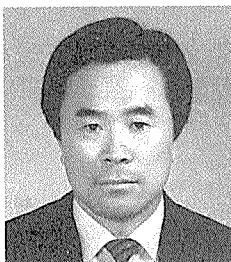


集積回路 知的所有權에 관한 國際條約 考察



崔 泰 昌
國際特許研受院 副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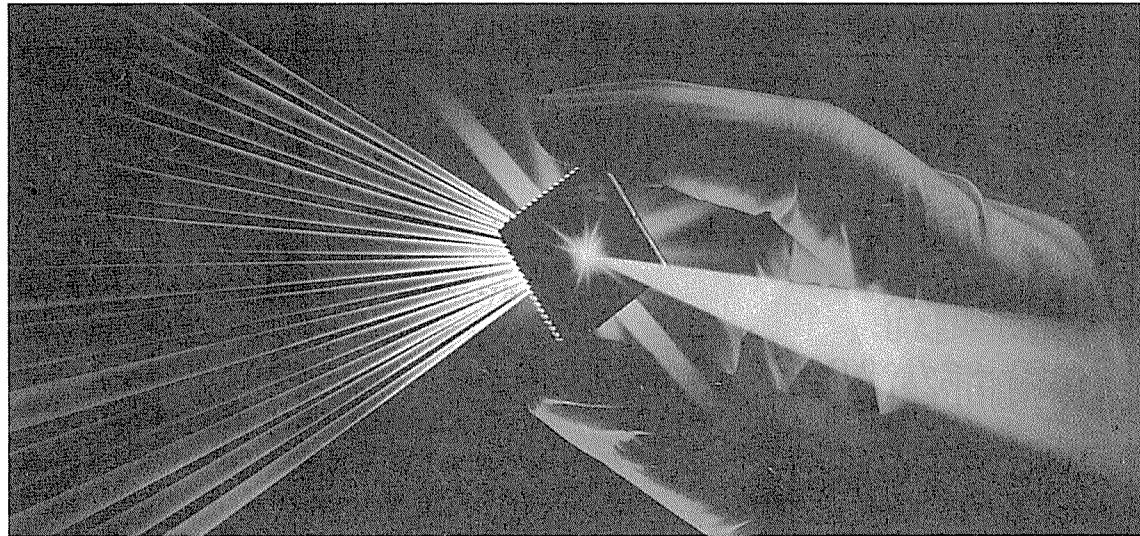
미·일·EC국 등
일부 선진국이 주동이
되어 WIPO를 중심으로 1985년
이래 수차의 각국 전문가회의를 개최
하여 왔으며 1989년 5월 미국의
워싱턴에서 동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집적회로
관련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1. 問題提起

첨단기술의 하나인 半導體產業의 발달과 더불어 그 要部인 반도체 칩 즉 集積回路 (Integrated Circuits) 와 이를 구성하는 配置設計 (Layout-Design) 創作技術의 발달이 필연적이었다. 칩의 회로를 설계하는데 컴퓨터 등 최신 설비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등 최신기술과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하는 반면 동회로를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기술의 특징이다.

동기술의 창시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은 설계의 모방이나 복제를 방지하고 전용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1970년대 말부터 반도체 칩을 保護하기 위한立法準備를 시작했으며 1984년에는 半導體 칩 보호법(美公法 98-620)을 制定하게 되었다. 同法은 日本의 반도체산업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우려하여 동기술을 갖고있는 先進國一部國家를 目標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外國人에 대한 自國法 적용을 内國民原則과는 다른相互主義(Reciprocity)를 채택하였으며 일본은 서둘러서 미국법에 기초한 반도체 칩보호법을 제정하여 일본의 반도체 칩이 미국시장에서 보호받을수 있도록하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일본뿐 만 아니고 영국, 서독 등도 서둘러서 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EC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는 EC집행부도 EC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때까지 자국법을 제정하지 못한 여타 EC 국가들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日本等 美國法 水準으로 自國法을 제정한 선진국들의 반도체 칩 보호법은 特許權이나 著作權 等 既存의 知的所有權과는 보호기간, 보호내용 등이 상이하여 새로운 형태(Suigeneris Approach)의 지적소유권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기초한 WIPO(世界知的所有權 機構)



내년부터 WIPO주관으로 모델법 제정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의 條約도 特別法 形態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상의 特許權과의 권리범위는 물론 條約基準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창의성(Originality)과 다를 뿐 만 아니라 보호기간도 짧기때문에 特許權과는 구별되며 著作權保護에 관한 베른협약 또는 世界著作權協約(UCC-UNESCO관장) 上의 著作權과는 창의성 내용이 다를 뿐 만 아니라 보호기간登録要件 및 확인물질의 기타 등이 상이한 것이 특징이다.

美·日·EC국 등 일부 先進國이 主動이 되어 WIPO를 중심으로 1985년이래 수차의 각국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條約案을 가다듬어 왔으며 1989년 5月 미국의 워싱턴에서 동조약채택을 위한 外交會議를 개최하여 “집적회로 관련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최초의 법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타국과의 경쟁력확보라는 보호주의적 성격을 띤 운영경험이 짧은 법이며 이법에 기초한 國際條約이 채택되었으므로 法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분석결과가 없으므로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조약 채택이 이르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조약채택과정에서 동기술의 이용국가와 동기술의 일반적 수혜국가의 의견

이 반영되어 당초안에 많은 수정이 가해 졌던 것이다.

본론에서 동조약안을 검토하고 미국, 일본 等 선진국의 기준법과 비교분석하여 조약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앞으로 국내법제정시에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코져 한다.

2. 條約內容 檢討

1) 用語의 定義

조약 2조에 조약에 사용되는 주요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본조약의 적용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조약당사자로 인정할수 있는 정부간기구(Inter Government Organization)에 대하여 설명코져 한다.

가. 集積回路 (Integrated Circuit : IC)

集積回路란 최소한 한개를 能動素子(Active Element)로 하는 수개의 素子들(Passive Element -受動素子 포함)이 전자적 機能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조각의 物質(Material) 위에 一部 또는 전체적 相互連結(Interconnection)을 統合的으로 形成하고 있는 最終 또는 中間形態의 制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가지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集積回路로 2個以上의 소자로 구성되며 그중에서 최소한 한개는 能動素子이어야 하고 이의 중간제품도 IC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美·日의 기존법이 중간제품의 보호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것에 비추어 볼 때 본조약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간製品인 Gate-array(論理型注文回路)나 Programmable Logic Device(PLDs) 등도 전자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조약상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단일素子로된 Discrete의 보호대상 여부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當初案에는 IC대신 마이크로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마이크로칩이 배치설계의 결합(Fixation) 개념이 포함된 製品名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IC라는 表現을 사용키로 했으며 따라서 본조약의 제목도 당초에는 “마이크로칩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조약”이었으나 집적회로 지적소유권 조약으로 바꾸게 되었다.

나. 配置設計(Layout-Design)

배치설계란 최소한 한개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素子들을 配置 형태에 관계없이 3次元的으로 配置하는 것 또는 집적회로의 部分的 또는 全體的相互연결을 3次元的으로 配合한 것을 말하며 集積回路를 생산할 목적으로 三次元的으로 배합한 것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美·日법이 保護要件으로 규정하고 있는 IC에의 결합(Fixation)概念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단순한 이론적 설계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칩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配置設計만을 담당하는 Design House 등이 유효하게 보호될 수 있어서 개도국에게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본다.

다. 政府間機構(Inter Governmental Organization)

政府間機構란 地球上 一定地域에 있는 國家로構成되고 本協約上の 문제와 관련하여 權한이 있는 機構로서 配置設計에 관한 知的所有權保護를 위한 自體法을 갖고 있으며 모든 會員國을 기록하고 内部절차에 따라 本조약에 서명, 인준, 승인, 가입할 權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약 15조(b) 규정에 따라 政府間機構도 조약의 當事者 資格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정의 규정에 합당한 정부간 기구는 단체로서 조약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EC가 장래 EC 통합을 전제로 동조약에 가입하겠다는 끈질긴 요청에 따라 本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이다.

2) 加盟國의 의무

3조(1)에 따르면 조약 가맹국은 6조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동불법행위가 저질려졌을 경우 적절한 법적 구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의 具體的內容은 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집적회로에 관계되는 권리가 상품에의 내장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조 IC를 내장하고 있는 상품 전체에 대하여 권리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조항은 당초안의 6조(보호의 범위)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6조1항 설명참조). IC가 상품의 주요부품인 경우와 IC가 상품의 단순한 부착물의 일부인 경우에 상품에 대하여 權利効力이 동일하게 미칠 수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3) 保護基準

配置設計의 保護基準으로서 創意性(Originality)을 규정하고 있으며 3조(2)에 의하면 창의성이란 제작자 자신의 知的努力의 所產으로서

설계제작당시 配置設計제작자나 집적회로 제조 업자사이에서 一般化되지 않은(Not Commonplace) 배치설계를 말하며 배치설계가 소자들의 일반적인 상호연결의 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로 보아서(taken as a hole) 독창성이 있다면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분적으로는 一般化된 내용이라도 전체로 보아 독창적 機能을 발휘한다면 독창성을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설계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독립하여 제작을 한경우에는 선권리자의 전용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2)(c)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한 설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문제될 수 있으며 정확히 동일한 설계는 있을 수 없으며 기능이 동일한 상당히 유사한 설계를 동일한 설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 또는 유사한 설계가 특허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권리가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 본조약상 보호되는 설계권은 불법복제로부터 보호될 것이지만 특허법상 보호되는 권리는 機能이나 技術內容을 보호하게 되므로 특허법상 보호되는 설계가 강력히 보호될 것이다.

4) 法的 保護形式

조약상의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締約國의 法律形式은 別途法이나 혹은 既存의 特許·實用新案·意匠·不正競争防止法 또는 여타법의 一部로 保護하여도 된다고 4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형태로 보호를 규정하더라도 條約上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즉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적소유권의 본질을 바꿀수는 없을 것이다.

본조약 가맹국이 베른조약 가맹국으로서 저작권법의 일부로 배치설계를 보호하게 된다면 본조약상 의무와 베른조약상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며, 본조약 가맹국이 파리조약 가맹국으로서 특허법의 일부로 배치설계를 보호하게

된다면 본조약과 파리조약상의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전자의 경우는 배치설계보호를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하지 않아야하고 창작자 사후 50년간 보호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칠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특허증을 허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약 12조는 본조약이 파리협약과 베른 협약상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치설계 보호의 법적형식은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안이 될 것이다.

5) 內國民待遇

일조약가맹국내에서의 타 가맹국 국민에 대하여 自國民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는 일반적 내國民待遇를 5조에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의 범위에 조약가맹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타조약가맹국내에 배치설계 제작이나 집적회로 생산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시설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도 포함하고 있다. 즉 배치설계의 제작·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한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동분야의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내국민 대우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다.

美·日 등 先進國法이 相互主義를 擇하고 있는 현행법추세에 비추어 볼 때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조약상의 基本義務만 국내법에 규정하고 구체적 시행절차 등이 相異하더라도 내국민대우를 받게되며 더욱이 조약가맹국내에서 배치설계 제작활동을 하고 있는 非加盟國 國民들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相互主義의 커다란例外가 될것이다.

6) 權利範圍

權利者의 承認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두가지를 6조(1)에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보호배치설계가 IC에의 결합에 관계없이 그전체 또는 창의성이 있는 어떠한 부분을 복제하는 경우 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보호되는 배치설계나 동설계가 결합되어 있는 集積回路를 商業目的으로 輸入, 販賣, 其他 供給하는 행위는 權利者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배치설계의 복제를 금지하고 동설계나 설계가 결합된 IC의 공급을 규제한다는 側面은 著作權 概念과 類似하나 保護期間과 登錄制度의 인정 등은 차이가 있다 하겠다.

당초안에는 保護IC가 장치된 商品의 去來에도 權利가 미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도국의 主張으로 이를 삭제했으며 따라서 위 조IC가 내장된 商品의 去來문제는 國內法에 위임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3조(1)(b)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국내법에 꼭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7) 權利의例外

權利者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호배치 설계를 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2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개인목적 또는 評價, 分析, 研究 教育目的으로 복제하는 행위와

둘째, 逆機能操作(Reverse Engineering) 등이다.

各國의 既存法이나 IC產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역기능조작이라는 표현을 본조약에서 직접 사용치는 않고 있다. 조약이 규정한 내용에 의하면 역기능조작이란 1차 배치설계를 역순으로 분석하여 얻어진 2차의 배치설계가 創意性이 있을 경우에 원권리자의 權利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적회로를 새로이 만드는 데는 배치설계제작에 많은 노력과 시설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이 회로를 역기능조작에 의하여 분석할 경우 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반도체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설계가 어느 정도 창의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며 아국과 같이 원 창작보다는 역기능조작에 의해 집적회로를 생산하는 국가는 원 창작자인 선진국

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大學이나 研究機關에서 研條 教育目的으로 보호설계를 복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知的努力이 없는 해적행위적 복제행위만을 위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強制實施權 (Non Voluntary License)

6조(3)에 의하면 權利者의 승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가맹국 정부는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실시권을 얻을 수 없을 때에 긴요한 국가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전용실시전으로 강제실시권(一名 非自發的 實施權)을 허여할 수 있다. 동실시권은 국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하고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가맹국은 또한 자유경쟁 확보를 위한 법적용과 권리남용 방지를 위하여 행정 또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강제실시권 허여문제는 사법적 재심이 가능해야 하며 긴요한 국가 목적상 허여한 강제실시권은 그 허여조건이 사라질 경우에는 강제실시권은 취소되어야 한다.

본 협약상 강제실시권은 파리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公益上 이유로도 강제실시권이 허용되도록 규정된 것이 특징인 반면 허여조건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특허권에 없는 역기능조작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실시권을 삭제하자는 입장은 견지했으나 개도국들은 역기능조작만으로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상의 강제실시권 인정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다. 강제실시권 허여조건을 제약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허여시기의 여건이 비정상적 이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실시권 획득이 불가능할 때 가능하며 국내시장에서만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여건과 긴요한 국가목적 등의 요건이 해지되면 강제실시권은 해제되어야 하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9) 善意取得者 保護 (Innocent Acquirer)

6조 4항에는 위조된 배치설계가 내장된 접적회로의 수입, 판매, 기타 공급하는 행위에 있어서 거래당시에 위조품인줄 몰랐거나 혹은 알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자의 행위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IC 속에 있는 배치설계나 상품에 내장된 IC가 위조품인지 여부를 일반거래자가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선의거래자가 위조품인줄 알고난 후에 권리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국내법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적당한 보상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權利者의 損失을 고려 해야하지만 위조품의 거래가격과 진품의 거래가격상의 차이의 이득분에 대하여 보상범위를 결정하여 선의취득자의 2중부담에서 오는 부당한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10) 權利消滅 (Exhaustion of Rights)

6조(5)에는 일단 권리자의 승인하에 시장에서 거래된 배치설계나 배치설계가 내장된 IC에 대하여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항은 교역에 있어서 병행수입(Parellel Importation)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소멸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國內的 소멸, 지역적 소멸(Regional Exhaustion) 및 國際的 소멸로 구분될 수 있으며 조약이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 제정시 이를 명기해야 할 것이며 대부분 개도국들은 국제적 소멸을 주장한 바 있었다.

11) 保護의 법적요건

보호요건으로서 조약 7조는 利用, 登錄 및 公開範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7조(1)에는 가맹국은 배치설계가 세계 어디에서든지 설계자체 혹은 IC와 결합하여 정상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있을 때까지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商業的 利

用을 保護條件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본조항은 기존의 각국법이 보호시점을 창작일(영국, 스웨덴 등- 저작권 개념),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대부분 국가들) 또는 登錄日(미국, 일본- 상업적 이용과 등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로 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모두 수용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정상적인 상업적이 이용이란 비밀로 개발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조(2)은 등록을 보호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출원서식과 함께 배치설계의 사본이나 도면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IC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때에는 IC가 목적하는 전자적 기능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IC 견본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이때에 출원인은 IC의 生產方法에 속하는 부분은 출원 설계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출치 않을 수 있다. 상업적이 이용이 있은 다음에 출원을 할 때는 최초 이용일로부터 최소 2년후에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소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으나 권리자가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권리보호 개시시기를 창작일이나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계산할 때에는 2년이 권리보호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12) 保護期間

보호는 8년으로 한다고 8조에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은 자국법규정에 따라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도체 제품의 Life Cycle이 짧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하지 않다고 보면 개시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에 보호개시 시기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보호개시가 창작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상업적 이용일이나 등록일로부터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 보호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대부분 개도국들은

창작일 또는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보호가 시작되도록 규정하지 않을까하고 선진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13) 紛爭解決節次

본조약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14조에 규정하고 있다.

粉爭解決對象은 條約解析上 異見이나 移行上의 분쟁에 대하여 본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로서 協議(Consultation), 其他 우호적 해결수단 즉 알선(Good Offices), 화해(Conciliation), 중재(Mediation), 조정(Arbitration), 패널심의(Panel) 및 권고(Recommendation)의 4 단계 수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화 해

분쟁당사국은 他當事國에 대하여 協議에 응할 것을 요청하면 타당사국은 신속히 이에 응해야 하며 쌍방은 일정기간내에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기타 우호적 해결수단

협의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쌍방간 합의에 따라 알선, 화해, 중재, 조정 등의 절차에 따라 우호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주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회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나 쌍방간에 합의가 불가할 시는 이수단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다. 패널심의

협의 또는 기타 분쟁 해결수단에 의하여 분쟁 해결이 불가능할 때에는 일당사국이 패널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는 3인으로 된 패널을 구성하여 조사케 해야 한다. 패널 구성원은 총회가 작성한 전문가 명단에서 분쟁 당사국이 외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패널 운영계획은 분쟁

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내에 합의 불성립시에는 총회가 분쟁 당사국과 패널 구성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패널보고서 작성시 분쟁당사국은 물론 이해관계인에게도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주어 작성되어야 하며 동 보고서에 대한 분쟁 당사국의 의견을 첨부하여 신속히 총회에 보고한다. 보고서는 위반사실 확인내용과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내용 그리고 분쟁당사국의 의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권 고

총회는 패널보고서와 분쟁당사국에 대한 자체의 의견을 토대로한 권고를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WIPO가 관掌하는 기준의 지적소유권 조약상의 분쟁해결 수단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분쟁당사국간에 합의가 불가능하면 제소 자체가 어려워 실효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으며 특히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UR) 지적소유권협상에서 지적소유권 분쟁해결에 가트분쟁해결방식을 도입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에 자극을 받아 처음으로 가트방식의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가트절차와는 다른 다소 완화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호적 해결방법으로서 협의절차 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더라도 알선, 화해, 중재, 조정의 수단을 패널구성전에 한번 더 시도하게 하였다.

둘째, 패널운영계획(terms of reference)은 분쟁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토록 하면서 패널진행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다.

셋째, 패널을 총회가 구성케 하여 총회결의 없이는 패널진행을 어렵게 하였다.

넷째, 패널구성원과 패널절차 규정도 총회가 결정케 했으며

다섯째, 조약위반 국가나 국민에 대한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협상력이 약한 개도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개도국 주장에 따라 규정되었으며 선진국들은 이러한 절차가 분쟁해결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14) 기타 행정관련규정

배치설계와 IC보호에 관한 실제 규정외에 조약운영에 관한 주요 행정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동맹구성 – 조약가맹국으로 동맹을 구성 한다.
- 나. 총회 – 2년에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다. 사무국 – 동맹운영에 관한 행정사항과 개도국 기술지원문제를 담당하고 동맹국에 대한 재정적부담을 강제할 수 없다.

라. 조약개정

○ 개정가능 조항은 다음과 같다.

2조(i), (ii) – 용어의 정의

3조(l) (c) – 보호대상

9조(1)(b), (d), (4) – 총회관련사항

10조(1)(a) – 사무국

14조 – 분쟁해결절차

○ 개정절차

가맹국 또는 총장이 개정을 발의하고 총 투표수의 4/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조약발효일 5년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마. 조약일부유보 – 유보를 금지한다.

바. 조약발효 – 5개국가입후 3개월부터 발효하고 그후 가입은 비준서기탁 3개월후 발효 한다.

사. 조약탈퇴 – 사무총장에게 탈퇴통지 한달로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아. 조약문언어 – 조약원문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이상에서 조약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조약이 갖고있는 특징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조약이 채택됨으로서 집적회로 배치설계보호문제가 美·日 등 일부 선진국의 국내 문제로부터 국제적 제도화를 기하게 되었으며 전통적 지적소유권인 특허권이나 저작권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지적소유권이 탄생된 것이다.

2. 본조약은 배치설계 창작자를 보호함은 물론 기술이용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 기존의 선진국 법과는 다른 점이라 하겠다.

3. 기술이 없는 다수국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규정된 공익을 위한 강제실시권하여, 보호기간 개시시기의 불명, 선의취득자의 보상의무 불명 및 분쟁 해결절차의 실효성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4. 저작권 개념과 특별법 규정 등 기존의 상이한 제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규정할 것을 위임한 내용이 많으며 각 제도를 동시에 수용하기 위하여 범용규정으로 된 조항이 많다.

4. 展望과 對應方案

조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으며 美·日 등은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IC보호기준제정에 대한 제안을 내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조약의 앞날을 명확히 예측 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의 검토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찰될 수 있다.

1. 60여개국이 참가하여 5년여에 걸쳐 제정한 조약이므로 앞으로 발효여부에 관계 없이 각국은 동조약을 모델로 하여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2. 배치설계의 창의성개념이 불명하고 역기능조작에 의한 2차설계와 원 권리자의 설계간에 창의성 한계가 불명할 뿐만 아니라 권리의 효력이 IC를 내장한 상품에 까지 미치는 보호효과의 증폭때문에 많은 분쟁이 예상되므로 조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내법이 제정되어

3. 條約의 特徵

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WIPO주관으로 모델법 제정회의가 개최될 것인바 그 결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강제실시 전, 보호기간단축, Reverse Engineering 등 기술이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국가는 기술 이용능력이 없거나 국가간의 기술격차가 크므로 기술이전 효과는 크게 기대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설계의 국제간 거래는 활발해질 것이

나 기술집중의 심화로 거래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4. 미국·일본의 가입여부가 본 조약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며 가트의 우루파이 라운드 (UR) 지적소유권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반대로 IC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범제정이 어려울 것인바 협상이 끝나는 90년말 이후에는 이들국가가 다시 WIPO조약에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